

#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8호 2021. 12. 13.(월)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

## 조 례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5호)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6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7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8호)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9호)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예천군 조례 제2470호)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5호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예천군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희망복지  
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19. 7. 16.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제2조의2 삭제)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간사 명칭 변경(제10조)

-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예천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희망복지지원담당 → 희망복지지원팀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6호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2021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되고”를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예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제6조제4항)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7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중 “총무팀장”을 “후생복지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예천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포상 금품 제공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정의 정비(제2조제1호)

- 후생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군의원, 청원경찰 추가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근로자”로 변경

#### 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후생복지사업 삭제(제6조제5호 및 제6호 삭제)

- 시행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치 이행
- 추진목적 : 퇴직예정자(장기근속)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기념금품 지급은 예산낭비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권고조치 이행

#### 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간사 변경(제18조제4항)

- 총무팀장 → 후생복지팀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8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업장 홍보 및 창업·제품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
- 6. 사업장 임대료

제5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육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 등록(인정) 전통시장 내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자
2.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 삭제(제5조)

-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나. 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육성에 대한 근거 신설(제12조의3)

- 지원대상 : 예천군 등록(인정) 전통시장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및 장비 비용, 홍보 및 창업·제품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사업장 임대료 등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9호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안 군청,”을 “동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을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장 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9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우리 군”을 “군 또는 군과 연결한 시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을 “군 또는 군과 연결한 시군”으로 한다.

제68조제6항제1호 중 “법 제113조제1항”을 “법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 중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을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 중 “자목”을 “자목, 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아목·자목”을 “아목·자목·너목”으로 한다.

별표 24 단서 중 “10호”를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100미터”를 “직선거리가 100미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최소 면적 지정(제13조)

-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 지정 가능

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 신설(제14조의2)

- 존치기간을 3년 이하로 지정

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추가(제26조)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50미터 미만의 진입도로 개설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제26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준용

마.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대상 추가(제58조)

-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적용

바. 농산물가공처리시설·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제59조의2)

- 연접한 시군까지 확대 적용

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별표 22)

-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허용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0호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치: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이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교육생”이란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 사용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한 행정사항
  6.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위원회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  
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②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제1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리를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을 포함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 상황, 제품 생산 · 판매,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에게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사용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8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실비 범위 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은 시제품 개발,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가공시설의 사용기간 중이나 사용 완료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기간)** ①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받은 농업인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25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7. 관계 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①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이 가공시설(장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공시설(장비) 사용료는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가공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시제품 개발 및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제품의 반출제한)**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과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브랜드)**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및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25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2. 제품의 제조과정 중 식품위해요소,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질 것
3. 가공시설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할 것
4.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를 분실하거나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할 것
5.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6.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 것

##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 1. 신 청 인

|               |  |                     |  |
|---------------|--|---------------------|--|
| 협 동 조 합·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연락처                 |  |
| 주 소           |  |                     |  |

### 2. 사용시설 현황

|      |                           |
|------|---------------------------|
| 소재지  |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
| 구 조  | 철골구조, 제조업소                |
| 건물면적 | m <sup>2</sup>            |

### 3. 사용기간

20 . . . ~ 20 . . .

### 4. 사용목적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 5. 사 용 료

예천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 사용조건

예천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름

위와 같이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주 소 :

- 붙임 1. 신청인 신분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증

|            |                                                                         |                     |  |
|------------|-------------------------------------------------------------------------|---------------------|--|
| 허가번호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                                                       |                     |  |
| 1. 신 청 인   |                                                                         |                     |  |
| 협동조합·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연락처                 |  |
| 주 소        |                                                                         |                     |  |
| 2. 사용시설 현황 |                                                                         |                     |  |
| 소재지        |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                     |  |
| 구 조        | 철골구조                                                                    |                     |  |
| 건물면적       |                                                                         |                     |  |
| 3. 사용기간    | 20 . . . ~ 20 . . .                                                     |                     |  |
| 4. 사용목적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                     |  |

가공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예천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수하여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 허가증

|          |                                                                                             |
|----------|---------------------------------------------------------------------------------------------|
| 허가번호     |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
| 사용자      |                                                                                             |
| 사용목적     | 판매용(        ) /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        )                                                     |
| 사용시설/장비명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br>~ 20        년        월        일<br>(        일)(        시간) |
| 사용료      |                                                                                             |
| 특이사항     |                                                                                             |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뒷면)과 같이 예천군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허 가 조 건

1.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과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 사항은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호

##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사 유 :

- 붙임 1.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용 현황 1부.  
2.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제정이유

예천군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능(제4조)

-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 관련 행정사항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5조 ~ 제13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 지원 등 결정

#### 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제14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 가공 시설 운영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 상황, 생산·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점검할 수 있음

#### 라. 가공시설의 사용(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1개월 전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수익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함
-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소속회원인 경우 매회 담당공무원에게 가공시설(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공시설(장비) 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 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마. 공동브랜드의 사용(제24조)

-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 신청 없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